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7월 1일

○ 회부일자 : 2002년 7월 3일

3. 제안이유

-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가.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 (제3조)

- 인터넷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게시자료 규정 및 운영부서, 관리부서 지정

나.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제6조)

-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자료 삭제 근거마련

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사이버민원실 및 참여마당을 운영함.
(제8조, 제13조)

라. 공무원과 주민대상 전자우편 ID 보급과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4조, 제15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